

IMF시대에 있어서의 고용확대를 위한 숲가꾸기사업추진계획(안)

이 계획(안)은 '98. 4. 5현재 실무 검토중에 있는 내용으로서, 사업목표·예산·추진요령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.

자료 : 산림청

I. 사업추진개요

기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국민적
역량을 결집

1. 목 적

- IMF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
산림사업에 투입하여
 -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실업대책
에 기여하고
 -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
제, 환경자원으로 조성하며
- 나아가 국가적 경제위기를 숲가꾸

2. 사업목표

- 총투자규모 : 39,502,552천원
(국고 35,701,276, 지방비
3,801,276)
- 고용계획인원 : 5,000명(연 704
천명 고용)
- 사업계획

구 분	합 계	간 별 등 나 부 가 꾸 기					도 시 근 교 산 림 정 비			
		계	간 별	천연림 보 육	당 굴 제거 등	장비· 식대	계	등산로 정비등	장비· 식대	
사업량(ha)	28,000 300km	28,000	11,000	5,000	12,000	-	300km	300km	-	
소요예산(백만원)	39,502	31,900	7,370	3,507	4,884	16,139	7,602	6,379	1,223	
고용 효과	연인원(천명)	846.7	570.9	267.3	60.8	116.8	-	142.9	142.9	-
	상시고용(명)	4,856	3,962	1,670	788	1,504	-	894	894	-

3. 기본방향

- 고용효과가 높은 산림사업을 우선 실행대상으로 선정
- 대단지 경제림 조성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권역화
- 기존의 산림사업과 작업체계, 사업공정 등을 차별화
- 생산재는 최대한 수집하여 국산소경재의 활용도 증진
- 취업자에 대한 산림기술교육으로 귀농 정착토록 지원

II. 세부추진요령

1. 취업지 모집공고

- 시·군·구에서 선정기준, 작업지역, 작업기간, 임금 지급수준 등을 공고(지역언론, 행정매체, 게시공고 등)
- 시·도에서도 관내 숲가꾸기사업 취업자 모집을 공고

2. 취업신청

- 신청장소 : 시·군·구청 산림(녹지)과
(산림청, 각 시·도, 임협, 생명의 숲 단체 등에서는 신청 안내)
- 신청서류 : 다음 각호의 서류 1부씩 제출
 - ① 숲가꾸기 취업신청서
 - ② 구직신청 확인서(구직등록을 한 기관에서 발행)

- ③ 실업급여 미대상확인서(지방노동관서 발행)

3. 취업대상자 선정

(1) 선정기준

- ①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
- ②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혜대상 이 아니거나 지급기간이 만료된 자
- ③ 31세 이상 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(나민, 등산로정비, 산지정화사업은 31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)
- ④ 장기적으로 산림작업을 희망하고 작업능력이 있는 자
- ⑤ 귀농을 희망하거나 사업실행지역에 연고자 있는 자 우선

(2) 선정결과 통보

- ① 신청서류등을 검토하여 위 선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
- ② 취업적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(별지서식 2)
 -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, 시설보호대상자는 제외

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(요약)

□ 대상자 선정기준

- (1) 필수요건(다음 요건을 공통적으로 충족할 것)

- ① 지방노동관서, 인력은행, 지방 자치단체에 구직등록한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
- ②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혜 대상이 아니거나, 지급기간이 만료된 자

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선정

- ③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중 보호필요자는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사업에 의거 보호

(2) 직종별 부가요건

(다음의 요건중에서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함)

- ① 가계의 소득 또는 자신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
- ②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었던 실직자
- ③ 직종별 연령기준을 정하되 31~50세의 실업자 우선선정
- ④ 기타 구직자의 적성, 해당직종의 성격 등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
□ 대상지 선정절차

-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업자는 구직신청확인서(구직신청한 기관), 실업급여 비대상확인서(지방노동관서), 기타 필요문서를 발급받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
- 대상 선정시 유의사항
 - ①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, 시설 보호대상자는 제외
 - ② 자활보호대상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와 그 러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

4. 교육 훈련

- 대상자 : 간벌 등 나무가꾸기작업 희망자
- 교육기간 : 4일(교육기간중 1일 20,000원씩 교육훈련비 지급)
- 교육내용 : 산림작업일반, 장비사용법, 안전관리요령 등
- 교육기관 : 임업협동조합의 3개 훈련원
 - 강릉 : 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 지역
 - 진안 : 광주, 대전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지역
 - 양산 : 부산, 대구, 경남, 제주 지역
- 교육형태 : 합숙교육(합숙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별도 지급)
- 교육증명 :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
- 교육이수 통보 :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자 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

5. 사업실행

- (1) 사업량 및 예산
 - 나무가꾸기 사업 :

31,900,000천원(국고 100%)

- 간벌 : 11,000천ha
7,512,098천원
- 천연림 보육 : 5,000ha
3,506,575천원
- 위생간벌 : 2,000ha
1,287,853천원
- 피해목벌채 : 1,000ha
371,076천원
- 어린나무가꾸기 : 3,000ha
2,062,746천원
- 덩굴제거 : 4,000ha
656,644천원
- 풀베기 : 2,000ha
518,414천원
- 급식비등 부대비 :
15,984,595천원
- 산림정비 사업 : 7,602,552천원
(국고 50, 지방비 50)
 - 등산로정비 : 300km
4,628,852천원
 - 산지정화 : 446천ha
4,628,852천원
 - 급식비등부대비 : 1,223,700천원

(2) 사업대상지 선정

- 간벌등 나무가꾸기 사업
 - 시·도별로 1~3개소의 「고용 확대를 위한 숲가꾸기 단지」를 지정(시·군별로 사업량을 배분하는 방법은 지양)
 - 간벌(피해목 제거, 위생간벌 포함), 천연림보육, 덩굴제거, 풀베기사업을 연계하여 연중 작업이 가능하도록 규모화

〈작업종별 단지 지정기준〉

작업종	간 벌	천연림보육	피해목제거	위생간벌
면적	100ha이상	100	50	50

※ 한지역에서 2개이상 작업종이 실행가능한 경우에는 단지규모를 조정 가능(1개 작업 단이 200일 이상 일할 수 있는 규모)

○ 도시근교 산림정비사업

- 등산로 정비 : 도시근교의 등산로 보수 또는 신설이 필요한 지역
- 산지 정화 : 산지정화보호구역 중 이용자가 많은 지역 우선
(산불감시등과 병행하여 실시)

(3) 사업대상지 결정

- 시·군·구에서 선정하여 시·도에서 검토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산림청에 보고
- 산림청, 시·도, 시·군·구, 임협등 합동으로 대상지 확인
- 현지확인결과를 기초로 사업실행지와 우선순위를 결정

(4) 작업단 조직

- 명칭 : 「숲 가꾸기 작업단」
- 인원 : 10명 기준(1명은 기능인 영림단등 전문기능인 포함)
- 대상 : 교육훈련을 받고 간벌등 나무가꾸기사업을 실행하는 자(도시근교 산림정비사업은 작업단조직 대상에서 제외)
- 작업조 편성 : 작업희망지역,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작업단을 편성

(5) 사업실행 체계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업실행, 사업대상지가 2개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는 시·도에서 실행하는 방안 강구
-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시·도 지사는 임업협동조합(중앙회포함)에 사업실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
 - 취업대상자료집, 대상지선정 : 시·군에서 담당
 - 취업자 교육훈련, 사업실행 : 임업협동조합(중앙회)

(6) 사업실행 요령

- 확정된 사업대상지중 사업의 시급성, 취업대상자모집용이성, 경관적측면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착수
- 현행 사업실시요령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사

용(산림청에서 사업종별로 규정을 수정 보완)

- 간벌, 천연림보육등 벌채 또는 잔존목(지역)선정등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산림공무원 또는 기술지도원이 담당
- 시장, 군수는 사업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 감독토록 하되 사업지가 대규모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·도에서 지도담당공무원 배치를 지원
- 임협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실행하는 경우 사업지별로 기술지도원을 고정 배치

(7) 임금, 식비 등 지급

- 비숙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사업공정보다 30%를 상향조정
- 간벌과 위생간벌의 경우에는 산물수집비용을 계상

〈사업실행단비표〉

(천원/ha, 천원/km)

간벌	천연림보육	위생간벌	피해목벌채	어린나무가꾸기	덩굴제거	풀베기	등산로
682,918	701,315	643,926	371,076	687,582	276,630	359,207	21,033,040

6. 인부금등 지급

- 임금은 1일 25,000원씩을 지급 (다만, 기능인이 작업단에 편성될 경우 1, 2공정까지 지급가능)
- 지급주기는 주급 또는 10일급 등 작업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되, 통장

입금을 원칙으로 함.

- 간벌등 산가꾸기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산악지대인 점 등을 고려하여 1일 15,000원(한끼 당 5,000원)의 급식비와 월 10,000원(1회 5,000원씩 2회)의 교통비를 지급

7. 숙박시설(캠프) 및 안전관리

- 사업지가 단지화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지숙박을 원칙으로 함.(연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외)
- 숙박시설(캠프)은 1개 작업단 이동식 막사 1동을 지원.
단, 폐교·농가주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설보수비 등을 지원

- 캠프내에 취사용 도구, 구급약품 등을 비치하며, 화재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
- 작업참가자는 직업 참가와 동시에 상해보상보험에 가입(보험료는 전액 국고 지원)
- 캠프는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, 시·군(또는 임협)에서 지도 담당자를 지정
※ 도시근교 산림정비사업은 비숙박으로 실행



잣나무 조림지가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.